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81호
------	------

<p>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보건소장
제출연월일	2023. 5. 16.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81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증진과장

1. 개정이유

논산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로 변경
- 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4203(2023.4.24.)]
-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복지정책과-14300(2023.5.2.)]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4286(2023.4.7.)]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 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제5조(종전의 제2조) 제1항제2호 중 “건강생활실천운동”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건 강 증 진 과 장	이 혜 란
	건 강 정 책 팀 장	이 규 화
	담 당 자	선 윤 아 (746-80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u>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제2조(정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u></p>
<p><u><신 설></u></p>	<p><u>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u> <u>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u>

<신 설>

제2조(기능) ① 논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생략)
2.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생략)

제3조 ~ 제10조 (생략)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강 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제5조(협의회 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건강생활실천사업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3조 (현행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건강생활실천사업 특성상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추계 결과

○ (2023년~2027년) 세출비용 : 383,7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 예산
기타 보상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① 강사비				
	- 우리마을 건강운동강사, 돌봄놀이터 강사, 별밤체조강사				
	②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구분	대 상 자	예상 인원	산 출 기 초	금 액 (천 원)
합계		8,553명		383,720	
2023년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	5명	135회×5명×60,000원 =40,500천원	67,680	
	돌봄놀이터 강사	3명	80회×3명×60,000원 =14,400천원		
	별밤건강체조 강사	1명	66회×1명×80,000원 =5,280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참여자	1,500명	5,000원×1,500명 =7,500천원		

	2024년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	5명	135회×5명×60,000원 =40,500천원	78,260
		돌봄놀이터 강사	4명	80회×4명×60,000원 =19,200천원	
		별밤건강체조 강사	2명	66회×2명×80,000원 =10,560,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참여자	1,600명	5,000원×1,600명 =8,000천원	
	2025년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	5명	135회×5명×60,000원 =40,500천원	78,760
		돌봄놀이터 강사	4명	80회×4명×60,000원 =19,200천원	
		별밤건강체조 강사	2명	66회×2명×80,000원 =10,560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참여자	1,700명	5,000원×1,700명 =8,500천원	
	2026년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	5명	135회×5명×60,000원 =40,500천원	79,260
		돌봄놀이터 강사	4명	80회×4명×60,000원 =19,200천원	
		별밤건강체조 강사	2명	66회×2명×80,000원 =10,560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참여자	1,800명	5,000원×1,800명 =9,000천원	
	2027년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	5명	135회×5명×60,000원 =40,500천원	79,760
		돌봄놀이터 강사	4명	80회×4명×60,000원 =19,200천원	
		별밤건강체조 강사	2명	66회×2명×80,000원 =10,560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참여자	1,900명	5,000원×1,900명 =9,5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 예상강사비는 2023년 지방자치인력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4~5급 기준으로 작성

3.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67,680	78,260	78,760	79,260	79,760	383,720
시 비	67,680	78,260	78,760	79,260	79,760	383,720
세 출	67,680	78,260	78,760	79,260	79,760	383,720
301 일반보전금 14 기타보상금						
○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수당	60,180	70,260	70,260	70,260	70,260	341,220
○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7,500	8,000	8,500	9,000	9,500	42,500
재원 조달	67,680	78,260	78,760	79,260	79,760	383,7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 세					
자체 수입	소 계	67,680	78,260	78,760	79,260	383,720
	지방세	67,680	78,260	78,760	79,260	383,7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